

1. 제정이유

각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모전 운영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세부기준,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 1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영 제3조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상금 또는 상품”이라 함은 수상자별로 최대 10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을 말한다. 이때, 상품을 수여하는 경우는 상품의 가액을 의미한다.

제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영 제6조제3항과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의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각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공모전의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